

『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6월 17일

제1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
 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 - 「하수도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- 「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
○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, 근거법령 변경

- 「구미시재무회계규칙」 개정으로 단위사무명 수정
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- 「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

라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사무위임사항(권한위임)의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·삭제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게 일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